##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

4		ト동의	. н	-	T	
	ι. υ	누는	ᅩ	Q	Л	۲

성명			아동과의 관계			주민등 (외국인	등록번호  등록번호)			
주소						연	락처	자택 : 휴대폰 :		
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 관계인 경우 표기하고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: [ ] 사실혼 [ ] 사실상 이혼										
	성명	출생지 (√체크)	복수국적 여부 (√체크)	아동수당 입금계좌						
아동수당				예금주명	아동과의 관계	금융기관	;	계좌번호		비고1)
신청아동		[ ] 국내 [ ] 국외	[ ]해당							
		[ ] 국내 [ ] 국외	[ ]해당							
통지방법	법 [ ] 서면 [ ] 전자우편 [ ] 문자메시지 [ ]기타( )				)					

- 2.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(아동과 가구원 / 예시 : 부, 모, 아동, 아동의 형제 자매)
  - \* (외)조부모는 아동 부모의 사망ㆍ이혼으로 인해 (외)조부모가 아동을 실제로 보호ㆍ양육하는 경우에만 기재
  - ※ 유의사항: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지장(인감 포함)으로 대신합니다.

아동과의 관계	동의자 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등)	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동의함 <sup>2)</sup> (하글 정자 서명 또는 지장·인감)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<sup>4)</sup> (한글정자 서명 또는 지장·인감)
		_	
		_	
		-	
		2 0 <sub>년</sub> <sub>월</sub>	일

3. 필요시**담당공무원이 아동 및 보호자, 가구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아 확인**하는 것에 동의함 ([]] 동의함, []] 동의하지 않음) \*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별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본인(대리신청인 포함)은 뒷면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고,「아동수당법」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**아동수당 지급을 신청**합니다.

신청인(대리신청인) 성명: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・금융기관장・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

- 4.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,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: 아래 참조
- 5. 정보제공 목적 :「아동수당법」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여부 결정・확인조사 지원 및 아동수당 입금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

<제1호 및 제2호의 각주 내용>

- 1) 아동수당 입금계좌가 아동발달지원계좌(CDA)인 경우 "발달지원"을, 압류방지통장일 경우 "압류방지"를 비고란에 적습니다.
- 2)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격정 및 자격확인 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
- 3)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서에 적힌 아동수당 입금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. 주민등록번호, 계잔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
- 4)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.(만일 동의하지 않는 경우,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).

## 금융정보등의 범위 금융기관등의 명칭 1. 금융정보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) 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: 3개월 이내의 평균 1)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 2)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자앤 2) 정기예금, 정기적금,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: 잔액 또는 총납입액 3)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) 주식, 수익증권, 출자금, 출자지분 : 조회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(時勢價額). 4)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 5)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 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. 6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 4) 채권, 어음, 수표, 채무증서, 신주인수권증서: 액면가액 자·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 5) 연금저축 :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회사 6) 1)부터 5)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7)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할인액 8) 「농업현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현은행 9)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)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. 신용정보 1)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11)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2)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12)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13)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 14)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3. 보험정보 1) 보험증권 :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 된 보험금 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 2) 연금보험: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관: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액 안내사항 처리기한 60일 이내(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) 관계 법률 아동수당법 2.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3. 난민인정증명서 1. 보호자의 신분증

첨부서류 (해당자)

- 4. 입금계좌 통장 사본
- 5. 가족관계 기본증명서(상세) 6. 대출금 등 부채 증빙서류
- 7.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재산 증명서류

## 유의사항

- 1.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「아동수당법」제7조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 • 변경 등의 확인 • 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소득 • 재산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 관계등록전산정보, 금융·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출입국·병무·보훈급여·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 및 적용 할 수 있으며, 「사회보장 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| 제34조에 따라 **5년간 보유**하고(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,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.
- 2.**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**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아동수당을 받은 자 또는 아동수당을 받게 한 자로부터 **환수할 수 있으며, 「아동수당법」에 따라 징역,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- 3.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 질문을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「아동수당법」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,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수급권이 상실될 수 있으며,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- 4.이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제공받은 경우**가구원, 소득 재산상태, 보호자 또는 국적 등이 변동되었을 때 신고** 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수당은 환수될 수 있으며, 「아동수당법」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5.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6.이 신청서에 따른 **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**는 「아동수당법」제6조에 따라 **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**, 향후 「아동수당법」제7조에 따른 **확인・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** 보건복지부장관이 **금융정보 등의 제공을**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- 7.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자(보호자와 그 가구원)의 금융정보 등은 「아동수당법」제8조제6항에 따라 **아동수당 지급 여부 결정 및** 아동수당 입금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 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의 벌칙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